

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9. 18.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문화관광과장)
- 제출일자: 2025. 9. 3.(수)
- 회부일자: 2025. 9. 3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(2025. 9. 18.)

2. 제안이유

- 달서문화재단의 정체성 확립과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명칭 변경(안 제7조, 안 제8조)
 - (현행) 상임이사 → (개정) 대표이사
- 결산서 제출기한 변경(안 제15조)
 - (현행) 4월말까지 → (개정) 2월말까지

4. 관련근거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9조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원 중 ‘상임이사’의 명칭을 ‘대표이사’로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, 출자·출연 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한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, 후속 조치로 재단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